###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71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천하람・이준석・이주영

김교흥 • 주호영 • 강준현

김병기 · 정일영 · 안규백

이용우 · 김종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될 경우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정부는 최근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등을 계획하면서 생산가 능인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변화 전망에 역행하고 생산가능인구에 불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 일관되게 과세 및 추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명확히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100%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안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으로서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제164조의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으로서 임원 또는 종
	<u>업원(이하 이 조, 제20조</u>
	<u>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u>
	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
	<u>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u>
	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u>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u>
	<u>아니할 것</u>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제20조(근로소득) 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 ③ (생 략)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 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해산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

-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언는 이익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164	4조	:의	5(-	국	외	주	스	ᆘ	수	선	택	권
	등	거	래	명/	세기	덕으	의 .	제-	출)	1	) -		
	1												

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u>임원</u>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 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가.·나. (생 략)

2. · 3. (생략)

②·③ (생 략)

------ 임원 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